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2023. 11. 28. 규정 제41호

(일부개정) 2024. 6. 25. 규정 제5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4인과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④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 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적절히 확보하여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제3장 위원장 및 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임원 후보로 추천된 자 또는 임원의 연임 관련 심의를 받은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및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군수에게 추천
3. 군수가 요청한 해당 임원의 연임 여부 심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전략경영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6. 25.>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장 임원후보자의 모집

**제10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군과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신문 광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평창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로 공개모집 하되 그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군수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제11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기관 임원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제12조(제출서류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팩스(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제5장 심사절차 및 방법

**제13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심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서약서의 제출)** 위원장은 임원의 추천심사와 연임 심사 전에 위원 각각으로부터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비밀 유지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서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간사로 하여금 보존·관리토록 한다.

**제16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 2]의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의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임원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 또는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연임 심의)** 공단의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채용과정 공개)** 이사장은 임원의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채용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기준, 추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행정안전부 기준 또는 공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규정 제41호, 2023.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51호, 2024. 6.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제13조 관련)

구분	세부기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 관리 능력</li> <li>• 노사화합과 조직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li> </ul>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li> <li>•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li> </ul>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li> <li>•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li> </ul>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li> <li>• 전력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li> </ul>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li> <li>• 관련 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li> </ul>

[별표 2]

##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직무수행요건 (제16조 관련)

### 1. 담당 직무

#### 가. 법령, 조례, 규정상의 담당직무

구 분	직 무 내 용
이사장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짐.
비상임이사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공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연번	주 요 업 무	중 요 도	
		이사장	비상임이사
1	평창군 및 군의회 관련 업무	매우 중요	·
2	행정안전부 및 평창군 관련 업무	중 요	·
3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관련 업무	중 요	중 요
4	외부고객(민간) 관련 업무	매우 중요	중 요
5	시민단체, 언론기관 관련 업무	매우 중요	·
6	이사회 관련 업무	중 요	매우 중요
7	경영 관련 제안 및 자문	·	중 요

#### 다. 공단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연번	주 요 업 무	중 요 도	
		이사장	비상임이사
1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매우 중요	·
2	중장기적 비전 설정	중 요	·
3	중장기적 목표 설정	중 요	·
4	연도별 사업계획(정책) 결정	매우 중요	중 요
5	사업진도 점검 및 문제·장애 극복	매우 중요	·
6	성과에 따른 보상	매우 중요	·
7	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 견제	·	매우 중요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연번	주요 업무	중요도	
		이사장	비상임이사
1	개인별·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	중요	·
2	조직 역량 제고	매우 중요	·
3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매우 중요	·
4	직원의 복지후생	중요	·
5	건·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매우 중요	·

2. 직무수행요건

가. 법령, 조례, 규정상의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6조의4 제2항
  -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나. 그 밖의 수행 능력요건

연번	주요 업무	요구되는 능력 수준	
		이사장	비상임이사
1	혁신과 변화 주도능력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2	리더십	상당히 요구	·
3	기업가적 능력	크게 요구	·
4	전문성	크게 요구	크게 요구
5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6	비전 및 경영전략 제시 능력	상당히 요구	·
7	의사전달 및 협상·섭외 능력	크게 요구	상당히 요구
8	청렴도	크게 요구	크게 요구
9	도덕성	상당히 요구	상당히 요구
10	준법성	크게 요구	크게 요구

다. 그 밖의 수행 능력요건(학력, 경력, 자격 등)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 없음

○ 경력

- 공단 사업관련분야 기업체 경영 경력자
- 공직 혹은 유사직종 근무경험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능력

- 관련분야 학위취득 여부, 외국어 능력 및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단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변화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별지 제1호 서식]

## 지 원 서 (제12조 관련)

공모 직위명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			
		월 일				
		주 소				
		전 화	[자택]( ) -	휴대폰	E-mail	
		[직장]( ) -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 재 지	평 점/ 만 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병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사항	군 별	계 급	복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 격 및 면 허	종 류	취 득 년 월 일	어 학	외 국 어 명	점 수	검 정 기 관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 무 부 서	직 위	담 당 업 무	근 무 기 간	퇴 사 사 유
					~	
					~	
					~	
					~	
					~	
					~	

(덧면)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그 밖에 업적**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국제화 활동 사항(국제적인 공동 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제12조 관련)

1.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련 사업 중 전문성 있는 분야가 있다면?
2.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단운영 방안
3. 공단조직을 이끌어갈 방향
4.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
5.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 시킬 수 있는 방안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제15조 관련)

본인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이사(장) 연임> 심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양심으로 실시하고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 모든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2. 심사대상자 중 본인과 친인척관계 등 면접을 기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린 후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그 밖에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또는 서명)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면접심사 평가표 (제16조 관련)

지원자 성명 : \_\_\_\_\_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만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전문성 (20)	1.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 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 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 환경변화에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 술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 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 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 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20)	1.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5	4	3	2	1	/20
	2.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3. 임원으로서의 자질을 준수하고 술선하는 자세	5	4	3	2	1	
	4. 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_\_\_\_\_ (인)



[별지 제8호 서식]

##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제17조 관련)

###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2○.○.○.)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2○.○.○.(월) 10:00, ○○○회의실

- 응모자 ○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2○.○.○)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인터넷 등(202○.○.○~○.○),  
평창군 홈페이지(202○.○.○~○.○)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2○.○.○~○.○)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20.0.0부터 2020.0.0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20.0.0)그 밖의 인터넷 등(2020.0.0~0.0),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20.0.0~0.0)

※ 접수기간 : 2020.0.0부터 2020.0.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총 ○명)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추천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자치단체장 추천				학 계
"				경제계
지방의회 추천				언론계
"				노동계
"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				세무사

[별첨 1]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별지 제7호 서식 관련)

성명	출생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 생년월일은 ‘○○.○○.○○.(예 : ’ 55.5.25.)로 기재
-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 2]

임원 세부 추천사유 (별지 제7호 서식 관련)

성명	현직	추천사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